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557
----------	-------

발의연월일 : 2026. 6. 26.

발 의 자 : 곽규택 · 배준영 · 송석준  
박수영 · 김대식 · 김은혜  
김미애 · 이종배 · 이헌승  
최수진 의원(10인)

## 제안이유

최근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실 사태는 선거관리 위원회의 선거 행정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극에 달하게 한 계기가 되었으며, 이를 기점으로 현행 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정치권과 국민 여론 모두에서 거세게 일고 있음. 특히 사전투표제도는 도입 이래 줄곧 부정선거 의혹의 한가운데 놓여 있었던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그간 누적되어 온 불신이 한꺼번에 표출되고 있는 상황임.

특히 현행법의 사전투표제도는 시행 이후 사전투표함의 보관·관리 및 투표함 인계·이송 과정의 투명성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은 선거 결과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음. 이에,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고 본 선거일을 2일로 연장함으로써 사전투표에 대한 불신을 차단하는 동시에, 투표용지

인쇄 축소비율 기준에 있어 70% 이상을 최소 하한으로 두고 투표용지 부족사태 재발을 방지하고자 함.

또한, 투표 종료 후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한 투표지에 대한 현장 개표를 실시하도록 하여 투표함 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신과 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투표지 관리의 투명성과 국민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

한편, 투·개표 참관인에 대한 교육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참관 업무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 선거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사전투표제를 일괄 폐지하고 본 투표의 선거일을 2일로 규정함(안 제33조, 제34조 등).

나. 투표용지 인쇄 축소 비율 기준에 있어 70% 이상을 최소 하한으로 정함(안 제151조).

다. 투표 종료 후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한 투표지에 대한 개표는 해당 투표소에서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우편으로 송부되는 거소투표·선상투표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소 중 1곳을 지정하여 진행함(안 제173조).

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개표 참관인에 대한 참관 교육을 실시함(안 제161조, 181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중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를 “선거일에”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투표참관인·사전투표참관인과”를 “투표참관인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및 사전투표관리관을”을 “을”로 한다.

제3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3호 중 “수요일”을 각각 “수요일과 그 다음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요일로”를 “수요일과 그 다음날로”로 한다.

제35조제2항제1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및 다목 중 “수요일에”를 각각 “수요일과 그 다음날에”로 한다.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서”를 “투표소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및 제4호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를 각각 “투표소에”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을 “투표소를”로 한다.

제58조의2제2호 중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를 “투표소로부터”로 한다.

제60조제2항 전단 중 “투표참관인이나 사전투표참관인이”를 “투표참관

인이”로 한다.

제65조제5항 전단 중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선거인 중 법령에 따라 영내”를 “영내”로 한다.

제122조의2제4항 전단 중 “및 사전투표참관인 수당은”을 “수당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투표참관인 및 사전투표참관인의”를 “투표참관인의”로 한다.

제146조의2의 제목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을 “(투표관리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1명을, 사전투표소마다 사전투표관리관 1명을”을 “1명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은”을 “투표관리관은”으로, “위촉하며, 사전투표관리관은 위촉된”을 “위촉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의”를 각각 “투표관리관의”로 한다.

제148조를 삭제한다.

제151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전투표소의 투표함(이하 “사전투표함”이라 한다)과 우편으로 접수한 투표를 보관하는 투표함(이하 “우편투표함”이라 한다)은 따로 작성하되, 그 수는 예상 사전투표자수 및”을 “우편으로 접수한 투표를 보관하는 투표함(이하 “우편투표함이라 한다)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이 경우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당해 선거구 선거인수의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수량의 투표용지를 인쇄하여야 한다.

제155조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5항) 중 “사전투표·거소투표”를 “거소투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6항) 본문 중 “오후 7시 30분(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9시 30분)에 닫으며, 사전투표소(제14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설치하는 사전투표소를 제외하고 사전투표기간 중 둘째 날의 사전투표소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오후 6시 30분에 열고 오후 8시에 닫는다”를 “오후 7시 30분(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9시 30분)에 닫는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8항) 중 “제6항”을 “제4항”으로, “제5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158조를 삭제한다.

제161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 ② 투표참관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62조를 삭제한다.

제163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65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66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166조의2제2항 중 “투표관리관 또는 사전투표관리관은”을 “투표관리관은”으로 한다.

제173조제1항 본문 중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전 5일까지 그 구·시·군의 사무소 소재지 또는 당해 관할구역(당해 구역안에 적정한 장소가 없는 때에는 인접한 다른 구역을 포함한다)안에 설치할 개표소를 공고하여야 한다”를 “개표소는 제147조(투표소의 설치)에 따라 설치된 투표소로 하며, 투표마감 후 별도의 절차 없이 개표소로 전환되며 그 투표소에서 투표한 투표지에 대한 개표는 해당 투표소에서 실시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우편으로 송부된 거소투표·선상투표의 개표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 내 개표소 중 1곳을 지정하여 실시한다.

제176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사전투표·거소투표”를 “거소투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중전의 제3항 및 제4항) 중 “우편투표함과 제2항에 따른 사전투표함”을 “우편투표함”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5항) 중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17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전투표 및 거소투표의”를 “거소투표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0호를 삭제한다.

제181조제2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2항 및 제3항”을 “제3항 및 제4항”으로, “제2항에 따라”를 “제3항에 따라”로 한다.

② 개표참관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212조의 제목 중 “거소투표·사전투표의”를 “거소투표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제213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15조제1항 단서 중 “선상투표 및 사전투표의”를 “선상투표의”로 한다.

제218조의4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1호로 한다.

제218조의25제1항 후단 중 “사전투표 및 거소투표”를 “거소투표”로 한다.

제230조제1항제1호 중 “투표참관인·사전투표참관인과”를 “투표참관인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을”을 “투표관리관을”로 한다.

제242조제1항제1호 중 “재외투표소·사전투표소 및 선상투표소”를 “재외투표소·선상투표소”로 한다.

제244조제1항 중 “투표사무원·사전투표사무원·개표사무원, 참관인”

을 “투표사무원·개표사무원, 참관인”으로 한다.

제248조제2항 중 “투표사무원·사전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을 “투표사무원·개표사무원”으로 한다.

제249조제2항 중 “투표사무원·사전투표사무원”을 “투표사무원”으로 한다.

제261조제8항제2호바목 중 “투표사무원·사전투표사무원 또는”을 “투표사무원 또는”으로 한다.

제277조의2제1항 중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 공정선거지원단원, 투표 및 개표사무원”을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투표관리관, 공정선거지원단원, 투표 및 개표사무원”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에 장기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營內)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자

2. 3. (생략)

4.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자

5.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기거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자

5의2. ~ 6. (생략)

⑤ ~ ⑧ (생략)

제58조의2(투표참여 권유활동)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  
-----투표소에-----  
-----  
-----

2. 3. (현행과 같음)

4. 투표소에-----  
-----  
-----

5. 투표소를-----  
-----  
-----

5의2. ~ 6. (현행과 같음)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58조의2(투표참여 권유활동) --  
-----  
-----  
-----  
-----

1. (현행과 같음)

2. 투표소로부터-----



⑤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선거인 중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자신의 거주지로 책자형 선거공보를 발송해 줄 것을 서면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장·경찰관서의 장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소속 군인·경찰공무원에게 선거공보의 발송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⑥ ~ ⑭ (생략)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

① ~ ③ (생략)

④ 제3항제6호에 따른 투표참관인 및 사전투표참관인 수당은 1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제7호에 따른 개표참관인 수당은 10만원으로 한다. 이 경우 투표참관인 및 사전투표참관인의 수당과 개표참관 도중 개표

⑤ 영내-----

-----  
 -----  
 -----  
 -----  
 -----  
 -----  
 -----  
 -----  
 -----  
 -----  
 -----

⑥ ~ ⑭ (현행과 같음)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수당은-----  
 -----  
 -----투표참관인의-----  
 -----  
 -----

참관인을 교체하는 경우의 수  
당은 6시간 이상 출석한 사람  
에게만 지급한다.

⑤ (생략)

제146조의2(투표관리관 및 사전  
투표관리관) ① 구·시·군선  
거관리위원회는 투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투표구마다 투표관리관 1명을,  
사전투표소마다 사전투표관리  
관 1명을 각각 둔다.

②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  
리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체의 소속 공무원 또는 각급학  
교의 교직원 중에서 위촉하며,  
사전투표관리관은 위촉된 투표  
관리관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각급 학교의 장이 선거관리위  
원회로부터 투표관리관 및 사  
전투표관리관의 추천 협조요구  
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  
에 따라야 한다.

④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  
리관의 위촉 및 해촉, 수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

-----  
--.

⑤ (현행과 같음)

제146조의2(투표관리관) ① -----  
-----  
-----  
-----  
-----  
-----  
-----1명을  
--.

② 투표관리관은-----  
-----  
-----  
위촉된-----  
-----.

③ -----  
-----  
-----  
-----투표관리관의-----  
-----.

④ 투표관리관의-----  
-----  
-----

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4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이하 “사전투표기간”이라 한다) 관할구역(선거구가 해당 구·시·군의 관할구역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를 말한다)의 읍·면·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읍·면·동 관할구역에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
2. 읍·면·동이 설치·폐지·분할·합병되어 관할구역의 총 읍·면·동의 수가 줄어든 경우
3. 읍·면·동 관할구역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 또는 같은 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이 있

-----.

<삭 제>

는 경우

4. 천재지변 또는 전쟁·폭동,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  
하여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  
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②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는 제1항에 따라 사전투표소를  
설치할 때에는 선거일 전 9일  
까지 그 명칭·소재지 및 설치  
·운영기간을 공고하고, 선거사  
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관할구  
역 안의 투표구마다 5개소에  
공고문을 첩부하여야 한다. 사  
전투표소의 설치장소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전  
투표소의 투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제147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 중에서 사전투표사무원을  
두어야 한다.

④ 사전투표소 설치 장소의 제

한·사용협조, 설비, 사전투표 사무원의 추천 협조 등에 관하여는 제147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10항 및 제11항을 준용한다.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기 위한 선거전용통신망을 구축하여야 하며, 정보의 불법 유출·위조·변조·삭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사전투표소의 설치·공고·통보 및 사전투표사무원의 위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①투표용지와 투표함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여 선거일 전일까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며, 이를 송부받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투표용지를 봉합하여 보관하였다가 투표함과 함께 투표관리관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①-----

-----  
-----  
-----  
-----  
-----  
-----  
-----

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생략)

③ 사전투표소의 투표함(이하 “사전투표함”이라 한다)과 우편으로 접수한 투표를 보관하는 투표함(이하 “우편투표함”이라 한다)은 따로 작성하되, 그 수는 예상 사전투표자수 및 거소 투표신고인수·선상투표신고인수를 감안하여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④ ~ ⑤ (생략)

⑥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소에서 교부할 투표용지는 사전투표관리관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의

----- . 이 경우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당해 선거구 선거인수의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수량의 투표용지를 인쇄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우편으로 접수한 투표를 보관하는 투표함(이하 “우편투표함”이라 한다)은 -----  
-----  
----- .

④ ~ ⑤ (현행과 같음)

<삭제>

형태로 표시하여야 하며,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 및 일련번호를 제외한 그 밖의 정보를 담아서는 아니 된다.

⑦ ~ ⑨ (생략)

제155조(투표시간) ① (생략)

② 사전투표소는 사전투표기간 중 매일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에 닫되, 제14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설치하는 사전투표소는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예상 투표자수 등을 고려하여 투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사전투표소에 이를 준용한다.

③ (생략)

④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개시하는 때에는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함 및 기표소내외의 이상유무에 관하여 검사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전투표참관인이 참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투표개시시각까지 사전투

⑦ ~ ⑨ (현행과 같음)

제155조(투표시간) ① (현행과 같음)

<삭제>

② (현행 제3항과 같음)

<삭제>





은 사전투표소에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은 다음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후 투표용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인에게 투표용지가 교부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분증명서의 일부를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저장하여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③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선거권이 있는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사전투표관리관”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일련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회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한다.

④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은 선거인은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한다)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칸에 기

표한 다음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합한 후 사전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관리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구역의 선거인에게는 회송용 봉투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기간 중 매일의 사전투표마감 후 또는 사전투표기간 종료 후 투표지를 인계하는 경우에는 사전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교부하여 투표하게 한 경우에는 사전투표함을 개함하고 사전투표자수를 계산한 후 관할 우체국장에게 인계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이 경우 사전투표관리관은 후보자별로 사전투표참관인 1명씩을 지정하여 해당 우체국

까지 동행하여야 하며, 사전 투표관리관이 지정한 사전투표참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행을 거부한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2. 제5항에 따라 회송용 봉투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투표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사전투표함을 직접 관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인계한다.  
이 경우 사전투표함 등의 송부에 관하여는 제170조를 준용한다.

⑦ 투표용지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투표소 출입 등에 관하여는 제157조제3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 전기통신 장애 등이 발생하는 경우 사전투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61조(투표참관) ① (생략)

제161조(투표참관)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 ⑤ (생략)

⑥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선정한 투표참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그 직을 사임할 수 없다.

⑦ ~ ⑭ (생략)

제162조(사전투표참관) ① 사전투

표관리관은 사전투표참관인으로 하여금 사전투표 상황을 참관하게 하고, 제158조제6항제1호에 따라 관할 우체국장에게 투표지를 인계하기까지 일련의 과정에 동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후보자마다 사전투표소별로 2명의 사전투표참관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 7일까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② 투표참관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 ⑥ (현행 제2항 ~ 제5항과 같음)

⑦ 제4항-----  
-----  
-----  
-----.

⑧ ~ ⑮ (현행 제7항 ~ 제14항과 같음)

<삭 제>

신고한 후 교체할 수 있으며  
사전투표기간 중에는 사전투표  
소에서 교체신고를 할 수 있다.

③ 사전투표참관인은 사전투표  
소마다 8명으로 하되, 제2항에  
따라 선정·신고한 인원수가 8  
명을 넘는 때에는 관할구·시  
·군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에  
의하여 지정한 사람을 사전투  
표참관인으로 한다. 이 경우 후  
보자수가 8명을 넘는 때에는  
후보자별로 1명씩 우선 선정한  
후 추천에 의하여 8명을 지정  
하고, 후보자수가 8명에 미달하  
되 후보자가 선정·신고한 인  
원수가 8명을 넘는 때에는 후  
보자별로 1명씩 선정한 사람을  
우선 지정한 후 나머지 인원은  
추천에 의하여 지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사전투표참관  
인의 선정이 없거나 한 후보자  
가 선정한 사전투표참관인밖에  
없는 때에는 관할구·시·군선  
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중에  
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4인에  
달할 때까지 선정한 자를 사전

투표참관인으로 한다.

⑤ 사전투표참관에 관하여는 제161조제6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부재자투표소를 설치·운영하는 선거관리위원회”로 본다. 이 경우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관리관”으로, “투표참관인”은 “사전투표참관인”으로 본다.

⑥ 사전투표참관인신고서의 서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63조(투표소 등의 출입제한)

① ~ ③ (생략)

④ 사전투표소(제149조에 따라 기표소가 설치된 장소를 포함한다)의 출입제한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5조(무기나 흉기 등의 휴대 금지) ① (생략)

제163조(투표소 등의 출입제한)

① ~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65조(무기나 흉기 등의 휴대 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전투표소(제149조에 따라 기표소가 설치된 장소를 포함한다)에서의 무기나 흉기 등의 휴대금지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166조(투표소내외에서의 소란 언동금지 등) ① ~ ④ (생략)

⑤ 사전투표소 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 등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관리관”으로, “투표사무원”은 “사전투표사무원”으로, “선거일에”는 “사전투표소 안에서”로 본다.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① (생략)

② 투표관리관 또는 사전투표관리관은 선거인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경우 해당 선거인으로부터 그 촬영물을 회수하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록한다.

제173조(개표소)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전 5일

<삭 제>

제166조(투표소내외에서의 소란 언동금지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 투표관리관은  
-----  
-----  
-----  
-----  
-----.

제173조(개표소) ① 개표소는 제147조(투표소의 설치)에 따라 설

까지 그 구·시·군의 사무소 소재지 또는 당해 관할구역(당해 구역안에 적정한 장소가 없는 때에는 인접한 다른 구역을 포함한다)안에 설치할 개표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신설>

제176조(사전투표·거소투표 및 선상투표의 접수·개표)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우편으로 송부된 사전투표·거소투표 및 선상투표를 접수한 때에는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의 참여

치된 투표소로 하며, 투표마감 후 별도의 절차 없이 개표소로 전환되며 그 투표소에서 투표한 투표지에 대한 개표는 해당 투표소에서 실시한다. -----

③ ~ ⑤ (현행 제2항 ~ 제4항과 같음)

② 우편으로 송부된 거소투표·선상투표의 개표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내 개표소 중 1곳을 지정하여 실시한다.

제176조(거소투표 및 선상투표의 접수·개표) ① -----  
-----  
거소투표-----  
-----

하에 이를 즉시 우편투표함에 투입·보관하여야 한다.

②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58조제6항제2호에 따라 사전투표함을 인계받은 때에는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의 참여 하에 투표함의 봉합·봉인상태를 확인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③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우편투표함과 제2항에 따른 사전투표함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고, 해당 영상정보는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우편투표함과 제2항에 따른 사전투표함은 개표참관인의 참관하에 선거일 오후 6시(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후에 개표소로 옮겨서 일반투표함의 투표지와 별도로 먼저 개표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

-----.

<삭 제>

② -----  
-----우편투표함-----  
-----  
-----  
-----  
-----  
-----  
-----  
-----.

③ -----우편투표함-----  
-----  
-----  
-----  
-----  
-----  
-----.

④ 제2항-----

기기의 설치, 투표함 보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79조(무효투표) ① (생략)

② 사전투표 및 거소투표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도 이를 무효로 한다.

1. 2. (생략)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 ~ 9. (생략)

10.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선거인이 선거일의 투표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해당 선거인의 투표

제181조(개표참관) ① (생략)

<신설>

② (생략)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표

-----  
-----  
-----.

제179조(무효투표) ① (현행과 같음)

② 거소투표의-----  
-----  
-----.

1. 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  
-----  
-----.

1. ~ 9. (현행과 같음)

<삭제>

제181조(개표참관) ① (현행과 같음)

② 개표참관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표

참관인의 신고가 없거나 한 정당 또는 한 후보자가 선정한 개표참관인밖에 없는 때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 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12인[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는 6인(한 정당이 선정한 개표참관인밖에 없는 때에는 9인)]에 달할 때까지 선정한 자를 개표참관인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정한 개표참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그 직을 사임할 수 없다.

⑤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개표장소, 선거인수 등을 고려하여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제2항에 따라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신고할 수 있는 개표참관인 수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개표참관인을 추가로 선정하여 참관하게 할 수 있다.

⑥ ~ ⑫ (생략)

참관인의 신고가 없거나 한 정당 또는 한 후보자가 선정한 개표참관인밖에 없는 때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 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12인[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는 6인(한 정당이 선정한 개표참관인밖에 없는 때에는 9인)]에 달할 때까지 선정한 자를 개표참관인으로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정한 개표참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그 직을 사임할 수 없다.

⑥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개표장소, 선거인수 등을 고려하여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제3항에 따라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신고할 수 있는 개표참관인 수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개표참관인을 추가로 선정하여 참관하게 할 수 있다.

⑦ ~ ⑬ (현행 제6항 ~ 제12

제212조(거소투표·사전투표의 투표용지 발송과 회송 등에 관한 특례) 동시선거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인마다 하나의 회송용 봉투 또는 발송용 봉투를 사용하여 행할 수 있다.

1. (생략)
2.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선거인의 투표지 회송

제213조(투표참관인선정 및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 ② (생략)

③ 동시선거에서 사전투표참관인은 제162조제2항에 따른 선정·신고인원수에 불구하고 당해 선거에 참여한 정당마다 2인을, 무소속후보자는 1인을 선정·신고하여야 한다.

④ 동시선거에 있어서 사전투표참관인은 8명 이내로 하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신고한 인원수가 8명을 넘는 때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이 선정·신고한 자를 우

항과 같음)

제212조(거소투표의 투표용지 발송과 회송 등에 관한 특례) --

-----  
-----  
-----  
-----  
-----.

1. (현행과 같음)

<삭 제>

제213조(투표참관인선정 및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  
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② (생 략)

제248조(사위투표죄) ① (생 략)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  
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투표사무원·사전투표  
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을 포함  
한다)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  
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49조(투표위조 또는 증감죄)①  
(생 략)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  
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투표사무원·사전투표  
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을 포함  
한다)이나 종사원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  
다.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 ~ ⑦ (생 략)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② (현행과 같음)

제248조(사위투표죄) ① (현행과  
같음)

② -----  
-----  
-----투표사무원·개표사무원  
-----  
-----  
-----.

(투표위조 또는 증감죄)① (현행  
과 같음)

② -----  
-----  
-----투표사무원-----  
-----  
-----  
-----.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1의2.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 마. (생략)

바. 제147조제9항, 제148조제3항 또는 제174조(개표사무원)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사무원·사전투표사무원 또는 개표사무원으로 위촉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유기하거나 해태한 자

2의2. ~ 6. (생략)

⑨ ~ ⑫ (생략)

제277조의2(질병·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 공정선거지원단원, 투표 및 개표사무원(공무원인자를 제외한다)이 선거기간(공정선거지원단원의 경우 공정선거지원단을 두는 기간을 말한

-----  
-----.

1. 1의2. (현행과 같음)

2. -----  
-----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  
-----  
-----  
-----  
-----  
-----

-----투표사무원 또는-----  
-----  
-----  
-----  
-----

2의2. ~ 6. (현행과 같음)

⑨ ~ ⑫ (현행과 같음)

제277조의2(질병·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 ① -----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투표관리관, 공정선거지원단원, 투표 및 개표사무원-----  
-----  
-----  
-----  
-----

다)중에 선거업무로 인하여 질병·부상 또는 사망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 ⑥ (생략)

-----  
-----  
-----  
-----  
-----.

② ~ ⑥ (현행과 같음)